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 진흥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8. 31.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8. 31.

다. 상 정 일 자 : 2007. 9. 6.(제13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가. 제안사유

- 제천지역의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투자유치를 촉진코자 함.

나. 주요내용

-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타 시·도 기업 지원비 구분(안 제25조 및 제26조)
-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안 제27조)
-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안 제30조 및 제31조)
- 대규모의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제33조)
-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안 제34조)
- 산업단지 기업지원(안 제3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제천시 조례 제 590호로 제정·공포되어 최근 2006년 4월 7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으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안(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6. 5. 26)을 근거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 우리시의 투자유치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창출하고자 국내·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업유치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 먼저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5. 25 ~ 6. 14일까지 전 시민과 단체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의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1,195,000m²에 이르는 제1바이오밸리를 비롯하여 제2 바이오밸리(1,296,311m²) 조성 등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입지조건과 소액의 재정지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란 쉽지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전면개정안을 상정한 바
- 내용을 살펴보자면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시·도 기업지원비를 구분하고 중대규모투자, 사업지원서비스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산업단지내 입주 기업, 외국기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세분화하여 지원 기준 및 범위, 항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세부적인 변경내용으로는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지급기준 중 입지 보조금은 정상가 50%내 상한액을 50억, 투자보조금 및 공장증설보조금은 10억초과 5%내 상한액을 50억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내용으로는 본사 이전보조금으로 투자비용 5%이내에서 3억원까지, 공장 및 연구소 이전보조금으로 10억 초과액 5%내

50억으로, 부지매입 보조금으로는 타·시·도 기업 공장 이전시 제천시 개정 조례 및 충북도내는 부지매입비도 포함 되었으며, 관내 중소기업 투자보조금으로 10억초과액 5%이내 3억, 공장증설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10억초과 5%내 상한액을 50억으로 하였습니다.

○ 중대규모 투자지원 내용으로는 200인이상 300억이상 투자기업에게는 특별지원도록 하였으며

○ 다음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관한 지원사항으로, 최고한도 50억에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건물임대료를 100인-199인까지 임대료 50%내 3년간 2억원, 200인이상 규모의 기업에 대하여는 임대료 50%내 3년간 최고 4억, 시설장비 설치 지원비는 설치비 30%내 2억 및 50%내 4억원까지 지원하며,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1인 월 50만원이하로 6개월간 최고 2억원 까지 지급 한도액을 설정 하였으며, 대규모 특별지원은 투자액 5%내 50억을 지원하며

○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였음

○ 또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 될 때까지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의 영업용과 전용공업용과의 손실차액보전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은 최고한도액을 투자금액 10%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확대 적용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입지보조금은 차액/정상분양가 50% 이내 및 임대료의 50% 이내로 지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투자기업등록 후 5년이내에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인이상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하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컨설팅보조금은 투자액 1%내에서 1억원을 지원하되 컨설팅 총비용의 5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보칙에는 투자기업의 이행여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검토결과 상위법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개정전 보다 대폭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을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났으며, 투자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는 여건하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경쟁우위 투자여건을 조성코자 함에 있어 특이 사항은 없으며, 우리시 실정을 고려하여 적극 시행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또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현재 있는지요?

(강현삼 의원)

○ 타시도 이전기업에 대하여 개정 후에는 최대 5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국도비 분담분은 얼마나 되는지요?(강현삼 의원)

○ 현재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협의중이거나 타 기업중 협의중인 기업이 있습니까?(강현삼 의원)

○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박성하 의원)

○ 투자유치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있으신지요?(박성하 의원)

○ 타 지자체보다 특화된 인센티브 요소는 무엇인지요?(박기석 의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은 남다른 지원안이라 생각되나 혹시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요?(박기석 의원)

○ 제1바이오밸리에 기업유치 현황과 전망은?(권건중 의원)

나. 답변요지 (투자유치팀장 차정민)

- 예, 국비 50%, 도비25%, 시비 25%입니다.
- 도비 60%를 지원 받게 되며 충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타
시도 이전기업은 도비 60%, 시비 40%입니다.
-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의 테마파크, 창원에 있는 노키아코리아, 한국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 약 3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2006년 1회, 2007년은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기업에 대한 최고 100억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타시도 이전기업도 최고 50억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그리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 심의기준을 강화 하겠으며 고용창출효과, 인구증가 기여도, 투자이
행도, 재무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17개업체이며 건설중인 회사가 9개회사입니다.
그리고 2008년 말이면 80%이상 가동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소수의견

없음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기업유치촉진 및 기업투자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